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감염예방·관리료, ECMO치료에 대한 영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

1.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에 대하여 감염예방·관리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,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의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치료는 '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, ECMO)의 인정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58호)에 해당되어 영양급여로 인정함을 알려드리니,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영양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감염예방·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1부. 끝.

**보건복지부장관**



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

주무관	<b>방희정</b>	서기관	<b>심은혜</b>	보험급여과장	<b>이중규</b>	전결 2020.1.31.
협조자	보건사무관	<b>이동우</b>				
시행	보험급여과-496	(2020. 1. 31.)		접수		
우	30113	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				/ 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http://www.mohw.go.kr</a>
전화번호	044-202-2736	팩스번호	044-202-3960	/ <a href="mailto:coldegg@korea.kr">coldegg@korea.kr</a>		/ 대국민 공개